세계동물복지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ANIMAL WELFARE)

선언의 가치

세계동물보호협회(WSPA)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세계동물복지선언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발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 문제가 모든 국가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동물복지 운동에 있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갖는 가치는 무엇이며 기존의 다른 선언들이 국제적 안건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존 선언들의 효용성에 대한 물음에 답이 될 만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van Vucci/PA Photos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유로 그 보편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성을 지닌 모든 공식 선언이 참고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닌 권고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1948년 유엔총회 채택 이래 세계 전 지역, 모든 국가의 견해 및 입장, 그리고 입법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해 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이 채택한 공식 선언으로, 유엔 내에 인권 감시 체계를 정립하는 등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년 채택, 1976년 발효)' 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년 채택, 1976년 발효)' 을 비롯한 다수의 문건들 역시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구성된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에 범세계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범세계적인 권위는 이 선언의 (존재하지도 않는) 법적 구속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엔 회원국 대다수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을 정의한다는 데 근거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고유의 법적 절차에 따라,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속도로 세계인권선언의 규범들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 같은 결정이 공식, 비공식적인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데 이 선언이 갖는 권위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선언이 가져 올 수 있는 '도미노효과(domino effect)' 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언이 비무력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선언의 실제 내용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선언 자체가 아니라 그 선언이 이끌어 낼 결과가 바로 선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북한이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비구속 합의의 한 사례가 됩니다. 이는 국제법 하의 조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부사항들은 추후 다루기로 하고 이해당사자 각자의 이해에 따라 공표하도록 허락된 구속력 없는 합의였습니다. 국제법의 전통적 근간이 되는 이전 조약들과 유엔헌장을 참고로 한 합의였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국제문서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공식적으로 발효되고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회원국 대다수의 면밀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이들 문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1999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는 인권과 극심한 빈곤에 관한 선언 초안(현재까지 유엔총회에 채택된 문서는 없음)을 고안하는 첫 번째 협의를 가졌습니다.

UDAW

세계동물복지선언은 동물이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동물 복지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동물 학대를 영원히 종식시키자는 인류,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세계동물복지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ANIMAL WELFARE)

한 참가자는 선언의 목적을 '가난과 극심한 빈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문제의 원인과 극심한 빈곤 현상을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이 기존의 선언들에서 얼만큼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예는 보편성을 가진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 점진적인 '벽돌 쌓기 접근방법(building-block approach)'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최근까지도 그렇지 못하다가 오늘날에는 당연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사안들이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법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한 예로, 2002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요하네스버그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 채택된 이래 사회, 경제, 환경 개발과 관련한 목표들이 공식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사안들은 모두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를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하네스버그선언은 새천년 개발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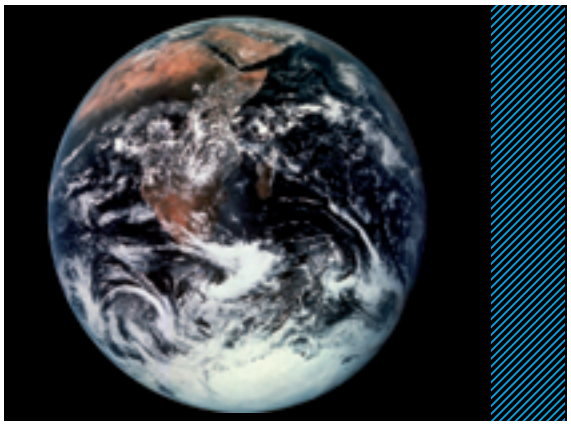

©NASA/PA Photos

195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1974년 유엔총회에서 선포된 '위급•무력분쟁에서의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유엔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뒤이어, 1986년 유엔총회 결의로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이 채택되었고, 1959년 '유엔총회에 의해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선포되어 1990년 발효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유엔총회 2000년 채택, 2002년 발효)'와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유엔총회 2000년 채택, 2002년 발효)'를 비롯한 여러 문서들이 추가되어, 회원국들은 여기서 제시된 아동의 처우 기준에 의거하여 관련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비록 집단 공동체 및 개인에 의한 협정 위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과거 수 십 년 간 다양한 협정서가 발휘하는 압력을 수용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WSPA

1967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선포된 데 이어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1년 발효)'이 채택되었습니다.

UDOW

세계동물복지선언은 동물이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동물 복지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동물 학대를 영원히 종식시키자는 인류,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세계동물복지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ANIMAL WELFARE)

1993년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을 채택하면서, 이 선언이 지지하는 권리와 원칙이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의 국제적 협정서에 새겨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는 평등, 발전, 평화를 목표로 '북경선언(Beijing Declaration)' 을 채택했는데, 이는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회의, 1990년 뉴욕에서 열린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 1992년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발전을 위한 유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5년 사회개발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등 유엔 회의 및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진전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Eugene Hoshiko/PA Photos

북경선언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국제 인권 협정서들 중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을 참조했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그 결과 북경에 모여 이 문제를 평등, 발전, 평화와 연관하여 직시하도록 한 것은 일련의 협상들과 그 결과 도출된 문안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1957년 '강제 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총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1959년 발효).

이 협약은 1930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 1932년 발효)' 의 조항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강제 근로의 폐지에 관한 이 협약은 다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UDAW

세계동물복지선언은 동물이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동물 복지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동물 학대를 영원히 종식시키자는 인류,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세계동물복지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ANIMAL WELFARE)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기 위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채택하고 1927년 발효한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유엔은 국제연맹을 계승하고 1953년 총회에서 '노예제 조약 개정 의정서'를 승인함)과, 채무에 따른 구속과 농노제의 완전한 철폐를 조건으로 유엔 경제이사회(ECOSOC)가 1956년 채택한 '노예제도, 노예매매, 그리고 노예제도의 유사 제도와 관행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이 그것입니다.

©Eugene Hoshiko/PA Photos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개념은 유민(流民)을 포함한 넓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유엔 총회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년 채택, 1954년 발효)'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유엔총회 1966년 채택, 1967년 발효)'라는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국가적 법률 제정과 적용은 오늘날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망명과 이민에 관한 치열한 논쟁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되는 이러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동물복지선언의 유엔 채택을 추진하는 목적은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적 법제와 발의를 확대,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세계동물복지선언은 각 국 정부가 동물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그 실행을 감시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여러 문서들과 같은 법적 구속력 없는 도덕적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세계동물복지선언은 현재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각 국 정부와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뚜렷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계동물복지선언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국제적 행동규범과 양립할 수 있으며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 안에서 수용 가능한 동물복지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채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동물복지선언은 초당파적인 방식으로 제안될 것입니다. 보편적 선언이 현실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에 관한 사안들에 대한 이해가 임계질량(critical mass)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용인을 얻어 국제적 의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동물복지 문제와 관련 있는 분야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발의를 지지할 것을 장려합니다. 보편적 선언은 그것이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수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동물복지선언은 이 선언에 담긴 가치와 원칙을 충실히 따르도록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북돋울 것입니다.

WSPA 2008

UDAW

세계동물복지선언은 동물이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동물 복지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동물 학대를 영원히 종식시키자는 인류,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WSPA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